

제221회 정례회
2003.12.22(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3년 11월 29일(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12월 18일(제8차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별표로 하여 동 조례에 삽입하고, 기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의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직속기관 및 지역소속의 도서관과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로 정하고, 아울러 그 이용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 함.(안 제11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신설 하여 삽입하는 내용 등 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시설 사용료를 별표로 하여 본문의 내용에 삽입하고 기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규정을 신설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됨.

○ 그러나 동 조례의 내용중

- 기존의 지역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던 시·군교육장 관할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승인 사항을 금번 개정조례의 부칙 제3항에서 다시 삭제하여 시행하는 사유와
※ 충청북도교육청관한위임에관한조례 제7조 별표1

- 아울러 최근 지방분권의 방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부단위 기관에게 그 사무를 대폭 위임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흐름에 배치되지 않는가의 여부

-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동 조례의 제명 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였는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문의 내용과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내용에는 “이용”과 “사용”을 혼용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 제11조의2제3항제2호, 제21조, 제32조, 제33조3항제2항제1호, 제2호, 부칙제2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조항별 내용 중 “이용”과 “사용”의 용어를 섞어 사용함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주어 이를 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이용”을 “사용”으로 함(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부칙 제2항, 현행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연월일 : 2003년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명).
-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 (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 개정조례안 : 불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기 타 : 입법예고(03. 09. 05 ~ 09. 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이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7조중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숙식비”를 “대하여 숙식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 ①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도서관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제1항중 “(별표 1)의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사용료)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설이용) ①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 및 장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원장 및 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원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3(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원장 및 장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원 및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별표 1·별표 2·별표 3·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6조 및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 신청하는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21호가목·제22호나목·제22호다목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11조의2 관련)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지역교육청소속 도서관	복 사 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 쇄 료 (디지털자료실)	후 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촬 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자실 등)			20,000원	1일기준

【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 연 장		50,000원	○ 전시설 사용기간 4월 ~ 10월(09:00 ~ 20:00) 11월 ~ 3월(09:00 ~ 18:00)	
	강 당		75,000원		
	전시실 (내부)		20,000원		
	전시실 (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 아 노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사용할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프로젝터	30,000원		
		난 방	실사용량	○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냉 방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재천학생회관	물 러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1인기준
			단체	400원	"
		일반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	"
	수 영 장	학생	개인	500원	"
			단체	400원	"
		일반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	"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다지불자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컬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별표 3]

□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제33조 관련)

(단위: 원)

충청북도학생 종합수련원	식비	진천시설	2,500	2,500	2,500	○ 1인 1식 기준
		보령시설	2,500	2,500	2,500	"
	숙박비	진천시설	무 료	무 료	3,000	○ 1인 1박 기준
		보령시설	1,000	10,000 (20,000)	20,000 (30,000)	○ 학생은 1인 1박 ○ 공무원 및 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시설사용료 (진천시설)		무 료	무 료	50,000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강당 사용료		무 료	무 료	50,000	○ 1일 기준
	강당 냉·난방비		무 료	무 료	실 비	○ 유류사용량에 따라 사용 당시의 유류가격 적용 ○ 에어컨 사용시 전기 사용 량에 따라 요금적용
	교재발간시 교재비		무 료	무 료	실 비	
기타 야영장	시설사용료		무 료	무 료	50,000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야영장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도서관(학생회관)시설 이용신청서

신청인 소속	기관명			전화	
	주 소			FAX	
이용시설					
사용목적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일간)	
이용인원					
이용대상					
특별설비					

귀 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〇〇〇도서관(학생회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이용시설구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진천시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	기타 야영장시설

	기관명				전화			
	주 소				FAX			
	해양활동과정()				입해수련과정()			
	간 부 수 련 ()				신입생오리엔()			
	특별활동과정()				특기개발과정()			
	수학여행과정()				교직원 연수()			
	교직원및가족휴양()				기 타()			
	200 . . ~ 200 . .	박 일			식사 (식)	월 월	일 일	조·중·석식 조·중·석식 조·중·석식
	학 생 (초·중·고)	명		명		명		
	인솔교사	명		명		명		
	공공단체 및 기타	명		명		명		
	교직원및가족	명		명		명		
	공공단체 및 기타	명		명		명		
	● 학 생 : 초(/), 중(/), 고(/) ● 일반 및 기타 : (/) 계 ()명 ※ (남/여)							
	※강당 등							
입학신청자 (인)	직 위				자택전화			
	성 명				휴대전화			

귀 수련원(야영장)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수련원(야영장)을 사용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학생) : (직인)

신 청 인(개인) : (인)

○○○수련원(야영장)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이용 변경(취소) 신청서

이용시설구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진천시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	기타 야영장시설

신청인 소속	기관명			전화		
	주 소			FAX		
변경·취소 사유						
시설이용 목 적	해양활동과정()			임해수련과정()		
	간 부 수 련 ()			신입생오리엔()		
	특별활동과정()			특기개발과정()		
	수학여행과정()			교직원 연수()		
	교직원및가족휴양()			기 타()		
이용기간	200 . . ~ 200 . . 박 일			식사 (식)	원 일 월 일	조·중·석식 조·중·석식 조·중·석식
수련원 이 용	생활관	구 분	남		여	
			인원	실	인원	실
		학 생 (조·중·고)	명		명	
		인솔교사	명		명	
	콘 도	공공단체 및 기타	명		명	
		교직원및가족	명		명	
		공공단체 및 기타	명		명	
야영장 이용인원	● 하 생 : 초 (/), 중 (/), 고 (/) ● 일반 및 기타 : (/) 계 ()명 ※ (남 / 여)					
기타 시설사용	*감당 등					
인솔책임자 (신청인)	직 위			주택전화		
	성 명			휴대전화		

귀 수련원(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학생) : (직인)

신청인(개인) : (인)

○○○수련원(야영장)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 · · · ·	· · · · ·	· · · · ·
제7조(정비징수) 교육연수원 이용자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비징수) 교육연수원 이용자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비징수) · · · · ·	· · · · ·	· · · · ·
제11조(사용료) ①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료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①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료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신 설〉		제11조의2(사용료) ①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도서관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징수)	①야영장 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심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	용료 징수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장장이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원장 및 장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원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33조의3(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원장 및 장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원 및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3년. 12. 18

발 의 자 : 이기동의원외

1. 수정이유

- 조항별 내용 중 “이용”과 “사용”의 용어를 섞어 사용함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주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용”을 “사용”으로 함 {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부칙 제2항, 현행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21조, 32조, 제33조, 제33조의 3 제2항 제1호, 제2호, 부칙 제2항,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각각 제목 및 서식의 내용과
- 현행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내용 중 각각의 “이용”을 “사용”으로 한다.